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81535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815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3나557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가소105997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칸도인베스트대부

피고, 상고인A

판결 선고 2015. 2. 26.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3나557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